



인권 성권강사 양성 워크북 1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1>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모든사람(인권교육연구단체)이 교재개발연구용역을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1>의 교재개발 참여자는
모든사람(인권교육연구단체)의 박병은(책임연구), 배우나(연구원), 정가희(연구원)이며,
교재의 인물그림 등은 김채은(동수원중학교) 학생이 그렸습니다.

표지 및 본문 디자인과 인쇄는 '디자인 모장'이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3층이고,
담당부서는 인권교육운영과이며, 전화는 02-2125-9826입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ISBN 978-89-6114-893-1 94370

978-89-6114-892-4 94370(세트)

※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재산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1월] 의
워크북입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나의 지나온 삶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크고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진 나의 삶에, 이제 인권강사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말들과 알아두어야 할 개념들이 때로는 커다란 돌처럼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도 하지만 인권을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나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니 하나하나 그 돌을 잘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단단한 버팀돌이 자리할 겁니다.

‘인권강사’는 인권을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인권강사를 인권교육가, 혹은 인권교육활동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불리든 ‘인권을 교육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권강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까요? 파커 J. 파머는 ‘가르침은 자신의 영혼에 거울을 들이대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인권강사도 인권의 거울에 서로를 비춰보며, 인권에 대해 알아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권강사양성과정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다소 막막하고 모호한 의미들이 나의 언어로 어떻게 분명해질 수 있는지, 그 의미들을 새기는데 이 워크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권강사의 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권강사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 그 어디든 인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혜를 나누고 연대의 싹을 틔우며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길벗으로 예비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워크북은 인권강사 기본과정의 참여자들을 위한
예습서입니다.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1」 제작 목적

- 이 워크북은 인권강사 기본과정의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개인별 학습을 보조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 이 워크북은 예습-학습-복습을 통해 주요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1」 활용안내

- 이 워크북은 각 주제마다 [예습하기-학습하기-복습하기]로 구성되어 단계별 정리가 가능합니다.
- [복습하기]는 주요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예습하기, 복습하기의 [메모일]을 기입하여 학습일에 따른 생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안 만들기]는 주요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으로 생각 넓히기]는 참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읽을거리]는 각 주제와 관련된 추천도서나 자료집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목 차

004 ○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006 ○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1」 제작 목적 및 활용안내

011

I. 인권의 개념

예습하기

학습하기

복습하기

- 인권
- 존엄
- 자유
- 평등
- 연대

051

II. 인권의 특성

예습하기

학습하기

복습하기

- 보편성
- 불가분성
- 상호의존성

067

III. 인권과 국가

예습하기

학습하기

복습하기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국가의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 국가의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089

IV. 국제인권규범

예습하기

학습하기

복습하기

- 유엔헌장
- 세계인권선언
- 유엔인권협약
- 조약기구

127

V. 국가인권기구

예습하기

학습하기

복습하기

- 국가인권기구
- 국가인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기구

153

VI.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예습하기

학습하기

복습하기

- 인권침해
- 차별행위
- 권리구제절차

193

부 록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53

○ 참고자료

표 목차

<표 1> 시대별 인권문서 목록	053
<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된 법률	078
<표 3> 인권 관련 유엔 및 조약기구	094
<표 4> 유엔의 인권 기구 비교	099
<표 5> 아시아지역 국가인권기구	129
<표 6> 인권침해 판단 흐름도	164
<표 7> 국내 개별 차별금지법	168
<표 8> 성희롱의 성립요건	174
<표 9> 진정서 양식	177

I. 인권의 개념



[목표]

인권·존엄·자유·평등·연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일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인권의 개념

예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인권강사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알아야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인권을 체득하기까지 법률가·철학자·역사학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교안 작성부터 교수법까지 학습할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을 준비하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면서도 유독 힘들다 느껴지는 건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할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을 하든 ‘인권적’이라는 말이 따라다니고, 일상의 일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받으며, 인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인권강사이다 보니 결국, 자신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기본적인지만 그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인권의 정의가 각 영역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가에 따라 설명 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권에 대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며, 인권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영역	'인권의 뜻' 찾아보기
 사전	※ 국어사전, 옥스퍼드 학습자 사전 등 다양한 사전을 찾아보세요.
 웹	※ 다양한 포털 웹사이트에서 '인권'을 검색해 보세요.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인권'을 검색해 보세요.
 도서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누리집 등에서 '인권'을 검색해 보세요.
 기타	

인권의 개념

학습하기

1. 인권의 의미

인권의 의미는 ‘예습하기’에서 살펴봤듯이 그 출처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는 사전적 의미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라는 법률적 정의까지 여러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권은 ‘추상적이며 모호한 것’이라 말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인권의 범위가 확장된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국내외 인권규범에 규정된 인권의 의미

인권교육에서 인권의 의미는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같은 국내외 인권규범으로 설명할 때가 많으며, 교육 주제에 따라 국제인권협약이나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권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면서도 비교적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생각열기’

「세계인권선언」 제2조의 차별금지사유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차별금지사유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열기’

혹시 영문에서 의아한 단어가 있었나요?
(예시) brotherhood

1948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인권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Article 1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Article 2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생각열기’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모든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
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
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국내외 인권규범은 ‘존엄’, ‘자유’, ‘평등’을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부문마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권리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의미를 국내외 인권규범으로만 해석할 경우, 법의 한계에 갇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의 범위를 헌법의 기본권과 동일시하거나 기본권이 아니면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외 인권규범을 포함하여 철학적·역사적·사회문화적으로 인권의 의미를 해석해 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로 풀어보는 인권의 의미

인권의 가치, 즉 존엄·자유·평등에 기반하여 역사를 재해석하는 방식은 참여자들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 ‘해님달님’과 같은 전래동화가 성역할을 고착시킨다는 비판적 해석이 있는 것처럼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권의 의미를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그 당시 모든 사람을 ‘인간(Les hommes)’의 범위로 포함하고 있었는지, 또는 영국 차티스트운동(Chartist Movement)으로 개정된 선거법이 배제시킨 사람은 없었는지 등을 인권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동력이 된 ‘로자 파크스(Rosa Parks)’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에 맞선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와 같은 인물들은 인권이 투쟁의 결과이면서도, 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각열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인권과 관련한 인물이나 사건들은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시) 동학농민운동 12개조 폐정개혁안

올랭프 드 구주

미국독립선언서

구빈법

애멀린 팡크허스트

아파트헤이트

엘레나 루스벨트

공장법

헤리엇 터브먼

프랑스대혁명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

여성참정권운동

맬컴 엑스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운동

로자 파크스

마틴 루터 킹

차티스트운동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넬슨 만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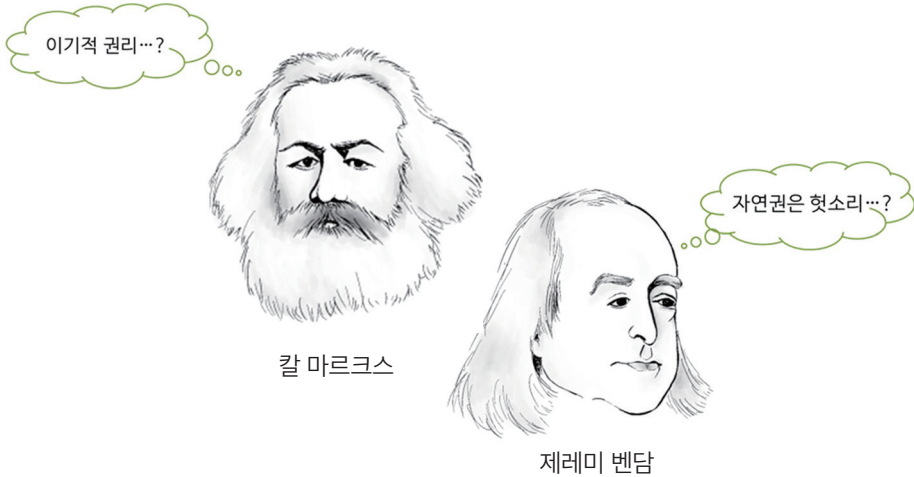
노예해방선언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목록 만들기

한편으로 인권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소개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혁명에서 규정한 ‘인간의 권리는 이기적인 권리’라고 말한 칼 마르크스나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자연권적 관념은 철학적 헛소리’라고 주장한 제레미 벤담과 같은 인물¹⁾입니다.

1) 출처 「사이버교육 보조교재 인권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6쪽

“인권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



2. 존엄의 의미

인권교육에서 '존엄(dignity)'은 자주 등장하는 핵심어로서, 「세계인권선언」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 국내외 인권규범에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설명하기보다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 인권교육을 받는 참여자들은 존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존엄의 의미

인권교육에서 존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모든 사람은 존엄한 가”에 대해 말로 설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적절한 설명방식을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에 존엄이라는 것을 일상

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평소 다양한 표현들을 수집·정리하여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누군가 “존엄이 뭐예요?”라고 질문했을 때, 일상의 언어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언어와 존엄

- 존엄은 나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 존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 존엄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 존엄은 바로 나이고, 당신이다.

또한, 존엄이라는 말이 다소 추상적이기도 하므로 ‘높을 尊’, ‘엄할 嚴’을 활용하여 ‘함부로 범할 수 없는 높고 엄한 것’으로 설명해 보거나, ‘dignity’의 사전적 의미인 ‘존경이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품격’으로도 전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존엄을 ‘예의’나 ‘예의를 갖춘 태도’로 설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의를 지키도록 요구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는 ‘예의를 지켜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즉 존엄이 태도나 형식으로 표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존엄을 훼손하는 사례’로 풀어보는 존엄의 의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적 상황에 놓였을 때 인권을 떠올립니다. “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거지?”, “왜, 나만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거지?”와 같은 의문이 들면, 인권을 찾게 됩니다. 결국, 인권은 보장될 때보다 무너지는 순간에 그 존재감을 드러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존엄이 무너지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뿐 아니라 고문, 학대, 빈곤, 차별, 혐오표현 등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감염병이 확산될 때 이주민·성소수자·장애인 등을 향했던 혐오표현은 이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냈고, 우리 사회의 차별구조를 더 공고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권교육에서 차별이나 인권침해로 인한 존엄의 훼손 사례는 참여자들의 마음을 무겁게도 하지만, 한편으로 존엄을 구체화하는 면도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목적이 존엄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거나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안내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의 교안 활용 예시

1. 화면에 ‘존엄’이라는 글씨만 띄운다..

강사 :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고 합니다. 오늘 교육에 온 여러분과 저는 모두 존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2. 화면에 포스터가 나온다.



강사 : “그림을 보면, 5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에 9명이 있어 일부는 눕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3. 화면에 ‘결정문’의 첫 장이 나온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선 21선정0032900 21선정0388301 21선정0443701 21선정0501001(합)
합) 교정기관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정 인 1. ○○○
2. △△△
3. □□□
4. ●●●

선정인 1. ○○○○구치소장
2. ○○구치소장
3. △△구치소장
4. ○○로도소장

주 문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도적인 처우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강사 : “이 사례는 미결수용자가 있는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라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 과밀수용이 무슨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4. 화면에 ‘구치소는 교정기관’이라는 글씨를 띄운다.

강사 : “구치소나 교도소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벌을 받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민법」 제915조에 규정되어 있던 부모의 징계권이 2021년 폐지된 것을 생각하면, 존엄을 훼손하는 비인간적 처우는 공포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5. 화면에 핀란드, 노르웨이 교도소 사진을 띄운다.

강사 : “아마 제가 수용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진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보면, 한 나라에 인권의 최전선은 교정시설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인식’이 요구되는 존엄의 의미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는 ‘지식’, ‘태도’ 및 ‘행동’을 인권교육의 주요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존엄이라는 주제에 적용해 보면, “존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나를 포함한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 찾기”로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존엄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있어 고려할 것은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누군가 대신 풀어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존엄한 존재이다”라는 것도 자기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태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여자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존엄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찾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 하는 이유, 감시와 검열을 끝내야 하는 이유, 무엇보다 전쟁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통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자유의 의미

인간의 존엄을 실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건은 자유와 평등이며,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정의가 존엄, 자유, 평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평등한 자유’, ‘자유가 있는 평등’은 인권의 근본을 이루는 짝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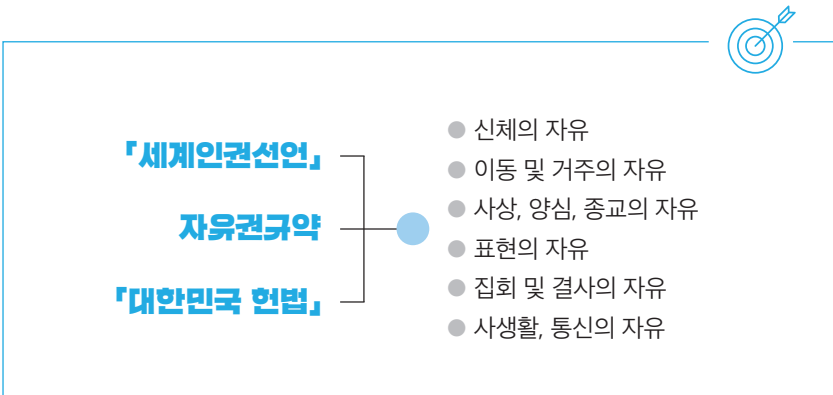
자유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익숙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나도 자유가 있어, 간섭하지마!”, “왜, 내 맘대로 못하는 건데?”와 같은 일상의 표현이 있다면,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시작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까지 그 범위와 용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 ‘권리’로 풀어보는 자유의 의미

인권교육에서 자유는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즉 ‘자유권’으로 그 의미를 설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권의 근거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B규약)」, 「대한민국 헌법」 및 개별 법률이나 조례 등이 활용됩니다.

자유권은 각 문서마다 공통으로 명시한 권리들이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권 목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에서 자유권을 설명할 때는 각 목록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거나 교육 주제나 대상에 맞추어 한두 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교육과 관련한 법률, 조례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므로, 최근 개정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내외 및 사이버 공간 등에서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1.02.>
-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교육감, 교장 등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생각열기’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몇 곳일까요?

다만, ‘권리로서 자유’를 설명할 때 그 확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밝혔듯이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생각열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관련 책이나 판결문 등을 찾아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나. ‘국가’의 역할로 풀어보는 자유의 의미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나요?”라는 질문은 국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합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을까요? 적어도 억압보다는 자유가, 차별보다는 평등이 실현되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100년 전 사람들이 꿈꾸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신분제도가 사라져 더 이상 양반인지 천민인지 따지지 않으며, 모든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수준은 보이지 않는 신분제로 기능하고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상기해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것도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기간행물 [인권] 2020년 6월호
'우리가 몰랐던,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인권운동'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억압과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나긴 투쟁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최고 권력을 가진 국가가 함부로 각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지만, 국가권력은 언제나 위협적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확진된 사람들의 이동경로가 낱알이 보도되고, 식당 등을 출입할 때마다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었던 일들은 감염병 확산 금지라는 목적하에 사생활의 자유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법률에 의한 조치이므로 합법적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870년대부터 1965년까지 미국 내 주법(州法)이었던 짐 크로법(Jim Crow Laws)도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인권은 합법적인가 아닌가로만 판단할 영역은 아닙니다.



“짐 크로법”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는 판결로 인종차별을 합법화했던 미국의 주법(州法)인 짐 크로법은 ‘짐 크로’라는 흑인 분장 캐릭터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1830년대 민스트럴 쇼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흑인을 게으르고 무지하며 비겁한 이미지로 만드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65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운동’으로 짐 크로법은 폐지되며, 이 해 유엔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합니다.



1900년 독백 코미디언인 Billy Van

(출처: 미국 의회 도서관)

<https://www.loc.gov/item/2014637077>

4. 평등의 의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말을 들으면 똑같이 나누거나 대우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직관적 느낌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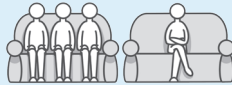
1948년 12월 10일 “모든 사람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1조)”라는 선언이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별·인종·종교뿐 아니라 장애·나이·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도 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평등의 유형’으로 풀어보는 평등의 의미

인권교육에서 평등은 권리로 강조되는 자유와 달리, 그 본질적 의미와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을 비교하거나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 절대적 평등: 비교대상을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 상대적 평등: 합리적 근거(이유)가 있다면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
- 기회의 평등: 사회의 모든 제도 등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갖는 것
- 결과의 평등: 불평등한 조건, 상태 등을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평등한 것



어떠한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성별·나이·종교·출신지역·출신국가·성정체성·사회적 신분 등을
참고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평등의 의미는 평등한 ‘대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유권은 ‘있다, 없다’ 또는 ‘침해받았다, 보장받았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평등은 ‘누가 누구에게, 누구와 비교하여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파악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나. ‘비교대상’과 ‘합리적 이유’로 풀어보는 평등의 의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는 평등을 설명하는 대표적 문구로, 이는

비교대상과 합리적 근거(이유)에 따라 차등적 대우가 가능하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즉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를 평등 원칙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남학생은 1번, 여학생은 51번부터 출석번호를 부여했다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학생이라는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르게 대우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석번호를 지정한 것이라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됩니다.



‘생각열기’

학교의 출석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의 시작번호(남 1, 3 / 여 2, 4) 등 우리사회의 번호 부여 방식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남학생의 출석번호는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지정한다면?”

2018년 결정례

(18진정 0191100 출석번호 부여 방식에 의한 성차별)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방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차별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다.

성차별적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하였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미 많은 학교에서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매기는 등 개선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출석번호 부여 방식 때문에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여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인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평등을 설명할 때 ‘공평, 공정, 정의’와 연계하여 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의 방식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끌 수도 있지만 그 내용과 설계가 촘촘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이야”,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가장 적절한 결정이야!”와 같은 표현이 일상에 자주 나타나는 것도 참고할 사항입니다.

다. ‘차별’로 풀어보는 평등의 의미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으로서 차별이 없는 것을 평등이라 말합니다. 즉 평등과 차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등에서도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교육주제와 관련한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 등의 차별금지 조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차별판단지침(2008)’이나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2020)’ 자료를 통해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인권교육은 그 필요에 따라 법률과 규정 등을 설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참여자의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므로, 이러한 규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 미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 · 용역 · 교통수단 · 상업시설 · 토지 ·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5. 연대의 의미

연대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인권교육의 목적은 모든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서 인권을 실현하는데 우리의 공동의 책임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이다.”²⁾라고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 행동계획에서 정의한 인권교육의 목적과 그 뜻을 같이합니다. 이처럼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도 연대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2) 원문 Human rights education aims at developing and understanding of our common responsibility to make human rights a reality in every community and in society at large.

가. 평등에 기반한 연대

연대는 서로가 동등한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대의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그 안에 위계나 서열이 존재한다면, 연대의 이름으로 누군가는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대가 배려나 관용의 또 다른 의미로 오용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니 서로의 배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연대에 있어서 동등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의 동정은 사람을 왜소하게 만든다. 그래서 무시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상대방이 자기는 강하고 너는 약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만남의 대칭성이 기우뚱해지고, 존엄성은 위협받는다.

(중략)

상대방의 처지와 바꾸어 생각하는 역지사지는 약자와 강자, 크고 작은자, 역할의 구분 없이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

- 파스칼 메르시어 '삶의 격' 중에서

1789년 프랑스대혁명 당시, 노동자 계급이 배척되었던 일이나 차티스트운동에서 여성이 고려되지 않았던 일들은 지금도 유사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성정체성·출신지역·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연대의 끈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나. 인권교육을 통한 연대

인권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쾌함을 표현하는 참여자가 있습니다. 강사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순간이지만, 한편으로 인권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연대는 동질적인 것만의 결속과 유대를 뜻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명제가 있으니, 강사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즉 인권강사는 교육 현장에서 참여자와 연대 의식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방송매체에 등장하는 연대는 동일한 옷을 입고 투쟁하는 모습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연대를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참여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연대와 관련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의 구성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생각열기’

국내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운동의 역사를 살펴 보면서 연대 활동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예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누리집 참고

일상에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평등법 제정 운동’에 ‘좋아요’ 누르기

[]
[]

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연대

인권교육을 요청받다 보면, “저희도 인권이 있다는 걸 말해주면 좋겠어요”라고 특별히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하지만, 그동안 인권교육이 공동체의 의무보다는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나 권리에 집중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두 시간 교육에서 공동체의 의무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더 빠듯하게 느껴져 준비한 내용을 다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교육에서 꼭 다루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30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나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인권이 이기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공동체의 의무는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연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므로, 앞으로 인권교육을 준비할 때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알아두면 쓸만한 TIP

인권교육은 참여자들이 인권을 알고, 태도를 갖추어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용어보다 일상어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 이로 인해 오해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가 “우리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참여자들 중 일부는 “그럼 내 맘대로 해도 되겠는걸!”,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건가?”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사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유, 평등, 차별’과 같은 익숙한 단어일지라도, 그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과정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교육내용을 꼼꼼히 준비하면 할수록 인권에 대한 오해나 왜곡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자유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인권의 개념

복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지금까지 인권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인권교육에서 인권·존엄·자유·평등·연대의 의미는 모든 것의 기초이며, 이것이 탄탄해야 다양한 주제들과 연계하더라도 헛갈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며, 주요 개념을 복습하기 바랍니다.



학습 내용 복습하기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존엄이란 누가 나에게, 내가 누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다.

[]

[]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도 연대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

[]



교안 만들기

이 워크북의 주제별 학습을 포함하여, 여러 자료를 학습할 때마다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인권이란?

사람
+
권리
=
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본 교안은 참고용이므로 디자인, 글씨체, 도형 등 각자의 방식으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생각 넓히기

인권교육 시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거나 여러 사람들과 토의해 보길 바랍니다.



<질문 1>

“모든 사람은 인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000같은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이나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나요?”



<질문 2>

“강사님, 강사님이 생각하는 인권은 뭔가요? 한마디로 정리해주시면 좋겠어요!”



[질문1] 답변 예시

우선 질문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범주에 ‘살인자도 들어가는가’라는 의문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이 있다는 말은 용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한 ‘모든 사람은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으니 처벌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억울한 일 없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답변 예시’는 참고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자료명	주제 / 내용	비고
사람을 옹호하라	인권의 가치	OO과목에서 추천



메모하기

[illegible]



메모하기

[illegible]

Ⅱ. 인권의 특성



[목표]

보편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의 의미를 알아보고,
일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인권의 특성

예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인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장애, 여성, 아동 등 각 관심 분야에 따라 그 시점은 다를 수 있지만, 권력이 분산되고 신이 아닌 인간 중심 사상이 확장된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권의 역사에 꼭 등장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마그나카르타(121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년)」,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1790년)」, 「노예해방선언(1863년)」 등 세계사에 기록된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문서들의 총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20세기의 새로운 토대가 되어 국제인권협약, 원칙·지침 등이 만들어지는데, 그 근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대별 인권문서를 통해 인권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해 보는 것도 인권 교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 1> 시대별 인권문서 목록

연도	내 용
1215	마그나카르타
1652	홉스(영국) ‘리바이어던’
1679	영국 ‘인신보호법’
1761	루소(미국) ‘사회계약론’
1776	미국 독립선언문
1789	프랑스 대혁명,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90	올랭프 드 구주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
1833	영국 ‘공장법’
1834	영국 ‘구빈법’
1837	영국 ‘차티스트 청원’
1848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
1914	제1차 세계대전
1919	파리 강화회의, 국제 노동기구 설립
1920	국제연맹 설립
1939	제2차 세계대전
1941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 연설
1945	국제연합(유엔) 창설
1848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특성

학습하기

1993년 6월 개최된 세계인권대회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하였고, 각 회원국들이 이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주목할 부분은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갖는다.”³⁾라고 인권의 특성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후 인권의 특성은 거의 모든 국제문서에 표기되어 그 당 위성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1. 보편성

세계인권선언의 원문을 보면, ‘all human beings’, ‘everyone’, ‘no one’, ‘all’, ‘people’ 등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인권이 있다라는 보편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교육의 참여자들은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원문 All human rights are universal, indivisible and interdependent and interrelated.

만약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왜 이용인의 인권만 말하는거지?”, “인권이 있다고 말만 하면 이뤄지나?”, “내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지?”와 같은 의문을 가졌다면, 이는 보편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거나 피상적으로만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의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편성

- 인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인권은 성별, 인종, 나이, 국적, 종교, 장애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 인권은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에서 보편성을 설명할 때 “인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다”라고 정의하기보다 ‘누구나 인권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 온전히 인권이 실현되는 곳은 없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도 인권교육에서는 중요합니다.

2. 불가분성

법정 의무교육이나 분야별 인권교육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권리들이 등장합니다.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등으로 범주를 구분하거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권리를 설명하는데, 이러한 교육내용은 간혹 인권의 불가분성을 이해하는데 방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불가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각각의 권리를 나열하는 방식은 한 두 개의 권리 보장이 곧 인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별적으로 특정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오해를 유발합니다. 특히 사회 이슈를 설명할 때 강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권리의 서열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이슈와 관련된 권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전달되어 다른 권리는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이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의 불가분성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각 권리들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을 권리와 연결하기

나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직업 선택의 자유).

→ 새로운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교육받을 권리)

→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사생활 보장)

→

→

3. 상호의존성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은 상호의존성, 즉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끔 인권교육을 받으면 이기적으로 변한다거나, 자신의 권리만 내세운다는 이유로 인권교육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문제라기보다 그 내용과 방식의 문제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어를 10년 넘게 배워도 대화를 못하고 있으니 영어 과목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는 것처럼, 인권교육도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아닌 내용과 방식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갖는 인권의 의무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리는 것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는 연대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설명에서 의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의무를 이행해야만 인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인권의 보장과 의무의 이행은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호의존성의 적절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잠시 멈추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Stand up for you’ 실천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이 운동은 세 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인권교육 시 토론이나 참여형 활동이 어려운 경우, ‘Stand up for you’ 세 가지 약속을 참여자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도 참여자들의 관심과 집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세 가지 약속’

I will respect your rights regardless of who you are.

당신이 누구든지, 나는 당신의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I will uphold your rights even when I disagree with you.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당신의 권리를 옹호하겠습니다.

When anyone's human rights are denied, everyone's rights are undermined, so I will STAND UP.

누군가의 인권이 부정될 때, 모든 사람의 인권도 무너지므로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I will raise my voice. I will take action.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나는 행동하겠습니다.

I will use my rights to stand up for your rights.

나는 당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나의 권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 출처 : <http://www.standup4humanrights.org>

알아두면 쓸만한 TIP

보편성을 설명할 때 「세계인권선언」의 원문이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라는 점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세계’라는 말을 들으면 ‘world’나 ‘global’을 먼저 떠올릴 수 있으니 「세계인권선언」의 원문을 활용해 보는 것도 참여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는 마르틴 니콜라(Martin Niemöller)⁴⁾의 글이나 인권작품공모전의 다양한 수상작들을 활용하여 인권의 특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왔다

제일 먼저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지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 출처 <세계인권사상사> 미셸린 이샤이 지음, 2010

인권의 특성

복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지금까지 인권의 특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인권교육에서 보편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은 모든 사람이 인권을 알아야 할 이유와 연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며, 주요 개념을 복습하기 바랍니다.



학습 내용 복습하기

보편성이란 누구나 예외 없이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

불가분성이란 권리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상호의존성이란 나와 타인의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안 만들기

이 워크북의 주제별 학습을 포함하여, 여러 자료를 학습할 때마다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1993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CONFERENCE MONDIALE
SUR LES DROITS DE L'HOMME

“보편성”

인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인권은 자격유무를 따지지 않는 것
인권은 나의 정체성이 차별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

※ 본 교안은 참고용이므로 디자인, 글씨체, 도형 등 각자의 방식으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생각 넓히기

인권교육 시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거나 여러 사람들과 토의해 보길 바랍니다.



<질문 1>

“강사님, 인권교육 시간에 저희도 인권이 있다는 걸 좀 말해주세요. 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자기 권리만 주장해요.”



<질문 2>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출근시간에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제가 약속에 늦어서 피해 본 건 누가 보상해 주나요?”



[질문1] 답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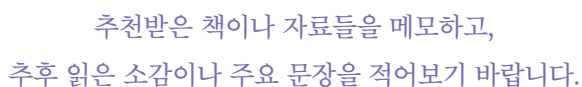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혹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어쩌면 교육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 이번에 교육할 때는 공동체의 의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학생들이 주장했다고 하는 사항이 학교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아니었을까요? 학생들이 표현 방식이 좀 거칠었을 수는 있더라도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 '답변 예시'는 참고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메모하기

[illegible]

Ⅲ. 인권과 국가



[목표]

인권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알아보고,
일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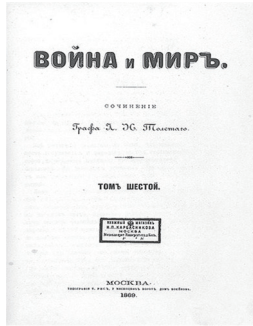
인권과 국가

예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인권강사 기본과정에 ‘국가’라는 주제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인권의 개념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인권은 국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도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권력은 국민을 보호하면서도 때론 참혹할 정도로 인권을 침해합니다.

소설 ‘전쟁과 평화’로 유명한 레프 톨스토이는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국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부조리에 맞서 저항하는 민중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며, 이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위태로울 때마다 애국심을 자극하여 그 위기를 모면할 때도 있는데, 이에 교육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 톨스토이가 주장했던 국가의 폭력성은 지금 사라졌을까요? 아직까지도 합법적 살인, 즉 사형을 집행할 수 있으니 최고의 권력자가 국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평화 초판 표지
(출처 : 위키피디아)

국가는 이처럼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국가 이외의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할 수 없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군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수 없으니 한국에서 군대는 국가 권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외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국가만 소유할 수 있는 것”

군대 - 군사용 무기 - [] - []

인권과 국가

학습하기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의 의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시혜나 동정이 아닌 권리로써 보장받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도 요구받지 않으며, 의무의 이행이나 보상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은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만이 각 개인이 온전하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의무의 주체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도 합니다.

2. 국가의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은 국가가 최대한 간섭하지 않아야 누릴 수 있는 권리들로서 국가의 소극적 의무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타인의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나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요구합니다.

인권을 보장하는데 이처럼 국가의 의무를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지금은 다소 무의미하지만, 이는 「세계인권선언」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라는 두 개의 규약으로 나누어 채택하면서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냉전 당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은 결국 규약을 두 개로 갈랐고, 이는 국가가 적극적 의무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후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1985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986년 림버그 원칙의 합의와 1997년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서 구체화됩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아직까지도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대부분 사회권과 연결되어 있지만 자본주의가 팽배해지고 이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국가의 개입을 통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존재가 되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라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의 적극적 의무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림버그 원칙(Limburg Principle)’

1986년 국제사법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와 네덜란드 림버그대학 법학부 등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권규약의 조항을 해석하기 위한 원칙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 및 사회권 체결국의 보고서 준비와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담아 합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림버그 원칙이며, 림버그 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Maastricht Guideline)’

1997년 1월 림버그 원칙 10주년을 기념하여 30여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 모여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존중 · 보호 · 실현’이라는 국가의 3대 의무를 담은 문서가 채택되었는데, 이것이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입니다.

2000년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는 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유엔 문서로 채택(UN E/C.12/2000/13)하였고, 이후 사회권규약 체결국은 국가의 의무 이행 여부를 국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3. 국가의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림버그 원칙(1986년)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1997년)은 제2장에서 국가의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으로 구분하고, 이 중 하나라도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제2장

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국가에 존중·보호·실현이라는 세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 세 가지 의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6. Like civil and political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mpose three different types of obligations on States: th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Failure to perform any one of these three obligations constitutes a violation of such rights.

가. 존중의 의무(Obligations to respect)

존중의 의무는 각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방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는 인권침해를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인권을 방해하는 요소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소유시설이 환경오염물질을 함부로 배출하는 일, 국가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일, 대안 주거시설 없이 강제 퇴거를 강행하는 일 등은 국가가 존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입니다.



국가의 존중의 의무와 사회권

건강권

-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기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
- 피임이나 성, 생식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지 않을 의무

교육권

- 공공 교육정책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할 의무
- 공립 학교 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을 의무

노동권

- []
- []

나. 보호의 의무(Obligations to protect)

보호의 의무는 제3자로부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 내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기업이 산업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국가가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는 것, 민간 고용주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방치하는 것 등은 국가가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인권침해입니다.



국가의 보호의 의무와 사회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

-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및 감독할 의무
-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조치 및 감독할 의무

교육권

- 아동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치 및 감독할 의무
-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거부당하지 않도록 조치 및 감독할 의무

주거권

- []
- []

다. 실현의 의무(Obligations to fulfill)

실현의 의무는 국가가 적절한 입법을 취하도록 요구하며,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행정, 예산, 사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는 인

권의 충분한 실현과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 및 실행해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성취의 결과도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이유를 증명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교육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의무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구축·이행하며 정기적인 감독을 통해 개선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의 실현의 의무와 사회권

문화권

- 지역간 격차 없이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
- 개인의 정체성을 이유로 문화 생활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

주거권

- 주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거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
-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자원과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

사회보장권

- []
- []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국가의 존중·보호·실현의 의무를 포함하여 ‘최소 핵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수 식량, 기초 의료, 기본적인 쉼터와 집 그리고 초등교육과 같은 것들인데, 이는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만일 이행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인권을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앞서 인권의 특성을 명시한 문서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1989년 11월 동독과 서독을 가르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후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해체로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유엔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인권이 강조되던 시기의 대표적 국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인권의 특성뿐 아니라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⁵⁾.”라고 명시하여 인권의 보장과 인권교육의 실행에 있어 국가의 역할 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에서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다루는 것은 인권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이해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향해 인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5) 원문 (중략) it is the duty of States,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ystems, to promote and protect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현재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작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일부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인권교육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을 교육대상과 주제에 맞추어 소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구조적 체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복지시설이나 기관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일부 대리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시설의 재직자가 국가를 대신해 인권을 보장할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인권이 있다’라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재직자의 인권도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 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의무 이행자(duty-bearers)와 권리 보유자(rights-holders)’라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무 이행자란 권리 보유자의 인권을 존중·보호·증진 및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⁶⁾를 의미하며, 권리 보유자는 의무 이행자와 관련하여 특정한 권리를 가진 개

6)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란 국가 이외의 행위 주체인 정부간 국제기구(IGO), 비정부 기구(NGO), 국제비정부기구(INGO), 테러리스트, 국제 무기 암거래 조직 등을 지칭하며, 국제 문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인이나 사회집단(social groups)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권리 보유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이동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의무 이행자인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존중·보호·증진 및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 보유자와 의무 이행자’에 대한 내용은 유엔인권협약 체결국의 국가보고서를 비롯한 국제문서에 자주 언급되지만, 국내적으로는 낯선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다룰 때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도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만한 TIP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1968년~1994년)’과 국민의 4대 의무를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권리가 우선합니다. 심지어 교육의 의무는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명시한 것이니, 스스로가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안 작성시 ‘헌법과 법률’을 인용할 때는 가능한 관련 조항을 축약 없이 담아,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인권과 국가

복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지금까지 인권과 국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인권교육에서 국가의 '존중·보호·실현의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며, 주요 개념을 복습하기 바랍니다.



학습 내용 복습하기

국가는 존중·보호·실현의 의무가 있다.

[]
[]

국가의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
[]

국가의 보호의 의무는 국가가 제3자로부터 개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
[]

국가의 실현의 의무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인권의 실현을 위해 총제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
[]



교안 만들기

이 워크북의 주제별 학습을 포함하여, 여러 자료를 학습할 때마다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1997) 유엔 사회권위원회 채택(2000)

존중의 의무
(respect)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보호의 의무
(protect)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할 의무

실현의 의무
(fulfill)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 실현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의무

※ 본 교안은 참고용이므로 디자인, 글씨체, 도형 등 각자의 방식으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생각 넓히기

인권교육 시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거나 여러 사람들과 토의해 보길 바랍니다.



<질문 1>

“사형제도를 왜 폐지해야 하나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죠. 인권은 너무 무책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2>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악법도 법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질문1] 답변 예시

그러셨군요.

혹시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때가 언제쯤인지 들어보셨을까요? 1997년 12월 30일인데, 거의 25년이 흘렀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처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흉악한 범죄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상관관계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흉악한 범죄가 발생할 일이 없는 사회라면? 예를 들어, 범죄자 처벌보다 혐오표현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경쟁보다 협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면, 조금 더 우리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사회와 살인을 생각할 일이 거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인권에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답변 예시’는 참고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읽을거리



추천받은 책이나 자료들을 메모하고,
추후 읽은 소감이나 주요 문장을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료명	주제 / 내용	비고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사회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의 핵심 조항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서 원문 내려받기 가능



메모하기

[illegible]

IV. 국제인권규범



[목표]

국제인권규범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일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국제인권규범

예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인권교육에서 국제인권규범은 어떤 경우에 활용할까요? 전반적으로 어떤 사실 또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이든 인권감수성교육이든 국제인권규범 자체를 하나의 주제로 교육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은 그 성격상 가입 또는 비준을 통해 당사국이 된 국가들만 법적 의무를 부여하므로, 인권교육에서 활용되는 규범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비준한 규범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간 합의로 체결된 국제인권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에 해당하는데, 그 명칭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칭의 차이일 뿐 어떤 식으로 불리든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갖고 있으며, ‘헌장’과 ‘규약’을 제외한 조약, 협약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 헌장(Charter) : (예) 유엔 헌장
- 규약(Covenant) : (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협약(Convention) : (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 (예) 여성차별 철폐 협약 선택의정서
- 협정(Agreement) : (예) 자유무역협정
- 규정(Statute) : (예)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 조약(Treaty) : (예) 핵무기 비확산 조약



국제인권규범

학습하기

국제인권규범은 국가 간 서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시해 놓은 것으로 국가가 협상을 거쳐 체결되며, 조약의 경우 '가입' 또는 '비준' 절차를 통해 조약 당사국이 된 국가들에 한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가입(Accession)

가입은 단일절차로서 '가입'을 완료한 국가는 조약의 의무를 수용하고 당사국이 됩니다.

비준(Ratification)

비준은 서명과 비준으로 구성된 2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서명'은 향후 특정 시점에 조약 당사국이 될 것이며, 그 이전에 조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후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가는 조약의 의무를 수용하고 당사국으로서 조약의 법적 구속을 받게 됩니다.

1. 「유엔 헌장」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로 시작하는 「유엔 헌장」은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이 서명함으로써 10월 24일 발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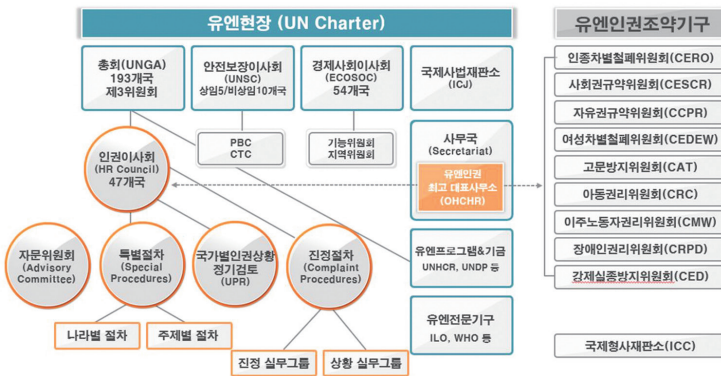
유엔은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정부 간 기구로서, 회원국 간 정치적 논의나 전문가 간 학술적 논의의 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조약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기준이나 의지를 담은 문서들을 공포하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를 두고 있어 제한적이지만 사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모든 기구들은 직·간접적으로 「유엔 헌장」을 따르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유엔총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엔사법재판소’ 및 ‘유엔사무국’ 등 주요기구를 두고 있고, 각각 보조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식량농업기구’,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전문기구와 ‘유엔개발계획’, ‘유니세프’와 같은 산하기구도 있어 그 체계가 매우 방대합니다.



<표 3> 인권 관련 유엔 및 조약기구

인권교육 시 「유엔 헌장」을 인용할 일은 많지 않지만, 모든 국제인권규범은 「유엔 헌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엔에 설립된 목적 중 하나가 지난 시대의 대규모적 인권 유린에 대한 반성으로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교육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 헌장」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유엔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운영에 있어 회원국의 부담금(각 나라 총소득에 따라 금액 산정)에 의존하는 만큼 경제적 규모가 큰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에서 모든 나라가 찬성하더라도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이 반대한다면 그 의제는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참고할 때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가진 국가들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기구 중 인권 영역은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맡고 있으며, 이는 1946년부터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던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60년 만에 유엔총회 산하로 격상되면서 2006년 설립된 것입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는 유엔 내에서 인권을 전담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의 주요 결의안과 인권문서들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누리집(https://www.ohchr.org/en/ohchr_homepage)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5년 유엔이 설립된 이후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유엔 헌장」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이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선언의 전문에서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라고 명시하여, 인권의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0여개 이상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인의 인권 지침서로써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이 선언을 채택할 당시 형식상 법적구속력은 없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어떤 규제나 제한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선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선언이 채택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선언의 일부 내용은 국제관습법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선언’일뿐이라는 설명은 필요 없을 듯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을 들고 있는 엘리너 루스벨트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이 가지는 시대적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이지만, 이 당시는 58개국으로 아메리카 21개국, 유럽 16개국, 아시아 14개국, 아프리카 4개국, 기타 3개국으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뚜렷했고, 종교도 기독교가 압도적이어서 그 다양성을 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선언을 작업하던 위원들은 식민지 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여성이나 가족생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한 면이 있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정교화했다는 성과는 분명하지만, 모든 일들은 명암이 있듯이 이 선언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것은 참고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인권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선언은 매우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므로, 앞으로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인권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국제인권장전이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한 바로 당일,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 형태의 조치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 1966년 두 개의 규약이 채택되면서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및 사회권규약은 국제인권장전으로써 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3. 유엔인권협약

국제사회가 하나의 협약을 채택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각 나라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역사 등이 다르고, 각자 이해득실을 따져 논쟁과 타협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협약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 인권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협약은 해당 협약의 이행을 권고 및 감시하기 위해 조약기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엔은 인권보장제도를 ‘유엔헌장에 근거한 기구’와 ‘인권조약에 근거한 기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형식과 내용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 4> 유엔의 인권 기구 비교

구분	헌장에 근거한 기구	조약에 근거한 기구
대표적 기구	인권이사회	각 조약위원회
구성원	정부 대표	독립 인권전문가
형식	다자간 협상	양자간 대화
대상	유엔 회원국	가입 당사국
성격	정치적	법적

유엔인권협약은 현재까지 총 9개가 채택되었고, 일부 협약은 해당 협약의 이행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선택의정서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도로써, 이는 협약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가 비준 절차를 완료해야만 체결국의 개인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구제 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그 효과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국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협약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 가입일	유보 조항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주요내용	1966.3.7.	1969.1.4.	1979.1.4.	없음
	이행 감시기구 (조약기구)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여러 학자마다 인종의 역사성에 대해 견해 차이는 있지만, 유럽의 각 나라들이 전 대륙에 크고 작은 식민지를 만들면서 인종 분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백인 중심의 인종 분류법은 선주민의 노동력과 자원을 약탈하면서 인종차별로 이어졌고, 이는 산업혁명기 값싼 노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은 인종차별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대전 후, 유엔이 설립되고 「세계인권선언」도 채택되었지만, 신탁통치라는 형태로 식민지는 지속되었고, 이러한 국가들이 독립운동을 지속하면서 인종차별의 문제도 동시에 쟁점화됩니다. 이에 유엔에서는 1963년 ‘인종차별철폐선언’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후, 다시 1965년 12월 21일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게 됩니다.



제1조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2022년 기준 182개국이 가입한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전문과 25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조약기구 누리집(<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erd>)을 방문하면 협약의 배경과 협약과 관련한 활동 현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협약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 가입일	유보 조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주요내용	1966.12.16.	1976.1.3.	190.7.10.	없음
	이행 감시기구 (조약기구)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선택의정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사회권규약은 1966년 채택되었지만 그 기준과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형식적으로 다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사회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격차가 크다 보니 일정한 수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회권규약과 관련하여 개인진정제도를 명시한 ‘선택의정서’는 자유권규약보다 뒤늦은 2008년 12월 채택되고, 2013년 5월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불확실했던 사회권의 각 권리들이 진정절차를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구체화되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권규약은 비준하였으나 ‘선택의정서’는 미가입 상태로 사회권과 관련한 개인진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171개 국가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전문과 5부 3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조약기구 누리집(<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escr>)를 방문하면 체결국의 국가보고서 및 연례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협약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 가입일	유보 조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주요내용	1966.12.16.	1976.3.23.	1990.7.10.	없음
	이행 감시기구 (조약기구)	시민적 · 정치적 권리위원회(CCPR) Human Rights Committee			

협약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 가입일	유보 조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한국 가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1966년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사회권규약과 동시에 채택되었으나, 사회권규약보다 70일 이상 늦게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약들은 최소 35개국 이상이 가입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는데, 10년이 라는 기간이 지나서야 35개국이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권규약은 2개의 ‘선택의정서’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진정제도를 담은 선택의정서는 다른 협약의 선택의정서와 동일한 형태이며, 우리나라도 비준하였으므로 해당 요건을 갖춘다면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지금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60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는 2021년을 기준으로 108개국이 폐지했으며,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144개국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73개 국가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은 전문과 6부 5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조약기구 누리집(<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cpr>)을 방문하면 체결국의 국가보고서 및 연례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

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내적 표현이므로, 조약기구 누리집 방문시 ‘The Human Rights Committee(인권위원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으며, 2021년 사형제도에 대한 3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라.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협약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 가입일	유보 조항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주요내용	1979.12.18.	1981.9.3.	1985.1.26.	없음
	이행 감시기구 (조약기구)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선택의정서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한국 가입)			

1893년 9월 뉴질랜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여성이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피선거권까지 인정된 것은 1919년이지만, 2015년이 되어서야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면 여성이 선거권을 쟁취하는데 걸린 기간은

한 세기가 넘습니다.

유엔은 1970년대부터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여성을 위한 유엔 10년 : 평등, 발전, 평화 프로그램’을 채택 및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성의 공적, 사적 영역의 문제들을 담은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이는 여성 인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인정을 이끄는 데 현재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1999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다른 의정서와 다르게 여성의 권리침해 상황을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89개 국가가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전문과 6부 3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조약기구 누리집(<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edaw>)를 방문하면 연례보고서 및 국제회의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 올랭프 드 구주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인간(Man)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 시기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과 맞서 싸운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 해방운동의 시초라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선두에 있었던 올랭프 드 구주와 동료들은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1790)’을 만들고, 이러한 활동을 한 대가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협약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 가입일	유보 조항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주요내용	1984.12.10.	1987.6.26.	1995.2.8.	없음
	이행 감시기구 (조약기구)	고문방지위원회(CAT) Committee against Torture 고문방지소위원회(SPT)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선택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는 과거 노예제도의 특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앰네스티나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최근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4년에 채택된 고문방지협약은 공무원, 공적 업무 수행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인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이 정의하고 있는 고문의 의미에서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와 같은 내용은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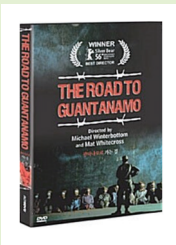
Article 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torture" means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a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or a third person has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or coercing him or a third person, or for any reason based on discrimination of any kind, when such pain or suffering is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200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국제감시기구가 국내외 구금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협약 이행 감시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 산하 ‘고문방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구금 장소를 방문하고, 구금 환경과 처우개선방안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73개 국가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은 전문과 3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조약기구 누리집(<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at>)를 방문하면 협약의 배경 및 연례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타나모로 가는 길’(2006년도 작품)



쿠바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국 해군기지에는 관타나모수용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번 감금되면 나올 수 없는 수용소로도 유명한데, 2016년 국제엠네스티는 관타나모수용소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난 14년 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서 물고문, 독방감금, 수면박탈 등과 같은 고문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서 테러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을 한 것인데, 현재까지 이들 중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은 없으며, 고문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

협약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 가입일	유보 조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주요내용	1989.11.20.	1990.9.2.	1991.12.20.	제21조(a), 제40조 2항(b)(v)
	이행 감시기구 (조약기구)	아동권리위원회(CR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한국 가입)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한국 가입) 아동권리협약 개인통보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은 과거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 주체자로 인정함으로써 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이 고유한 인권을 가진 주체이며, 부모나 다른 어떤 성인의 권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약 제3조는 아동과 관련한 기본원칙으로서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이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협약 감시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체결국들이 나이 제한과 관련하여

여 내부적 검토를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영유아와 10대 소녀·소년 이 직면하는 문제는 매우 다른 만큼 나이로만 기준을 정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은 3개의 선택의정서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를 논의해 온 결과로 2000년 5월 25일 채택됩니다. 이 의정서는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하여 각 체결국이 국가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96개 국가가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은 현재까지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했으며, 미국은 1995년 2월 16일 서명한 이후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 협약은 전문과 3부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조약기구 누리집(<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c>)를 방문하면 협약의 배경 및 각 선택의정서와 관련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협약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 가입일	유보 조항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주요내용	1990.12.18.	2003.7.1.	미가입	
	이행 감시기구 (조약기구)	이주노동자위원회(CMW) Committee on Migrant Workers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됩니다. 더군다나 경제적 불평등은 양극화로 이어져,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몰아가 결국 고향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12월 유엔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나 2022년 6월 기준 57개국만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입국의 대다수는 자국의 노동자가 해외로 취업을 나가는 경우라서, 정착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이주노동자 유입국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기준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민정책에 대해 간섭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협약 제2조에서 정의하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란 “한 국가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거나 종사한 적이 있는, 국민이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주노동자 관련 규범들이 합법적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 협약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9부 9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조약기구 누리집(<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mw>)를 방문하면 협약의 배경 및 연례보고서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시노동이주 현황”

2017년 OECD 국가로 유입된 임시노동이주(temporary labour migration) 규모는 490만명⁷⁾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임시노동이주자는 농업이나 건설업 및 운송업 등 저숙련 노동분야와 IT 등 고숙련 노동분야로 나뉘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숙련 분야의 경우, 각종 차별과 착취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유입 국가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도 사회보장이나 기본적인 노동권은 보장받지 못하며,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해고되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

협약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 가입일	유보 조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주요내용	2006.12.13.	2008.3.3.	2009.1.10.	없음
	이행 감시기구 (조약기구)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선택의정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7) 한국 OECD 대표부 누리집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7/view.do?seq=87

유엔은 1980년 1월 13일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한 후,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구호로 각 정부의 참여를 독려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1981년 심신장애 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유엔은 ‘세계 장애인 10년’을 채택하면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이후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게 됩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e)항에 의하면, 장애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와 환경적인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Persons with Disabilities’로 표현함으로써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체성 중 하나가 장애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2006년 12월 13일 채택되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미가입 상태입니다. 또한 2008년 12월 협약 가입 시 ‘제25조 마호 장애인 보험 비차별’ 조항을 유보한 상태로 처리하여, 장애계는 유보조항 철회와 선택의정서 가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14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제25조 마호 장애인 보험 비차별’에 대한 유보 철회안과 선택의정서 가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유보 철회안은 유엔에 통보하여 그 효력이 발휘되었지만,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선택의정서는 2022년 6월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85개 국가가 가입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5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조약기구 누리집(<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를 방문하면 협약의 배경 및 연례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

협약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 가입일	유보 조항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주요내용	2006.12.20.	2010.12.23.	미가입	
	이행 감시기구 (조약기구)	강제실종위원회(CED)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강제실종은 직·간접적으로 국가폭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발의 철회’ 요구로 시작된 홍콩 시위와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때 사라진 사람들을 떠올리면, 강제실종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입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강제실종'은 당사국의 요원 혹은 당국의 승인이나 지원 또는 묵인 하에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 또는 모든 형태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며, 이후 국가에서 이러한 자유의 박탈에 대해 인정을 거부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생사나 행방을 은폐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enforced disappearance” is considered to be the arrest, detention, abduction or any other form of deprivation of liberty by agents of the State or by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acting with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the State, follow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e deprivation of liberty or by concealment of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e disappeared person, which place such a person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국가가 언제든지 한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일시에 박탈할 수 있다는 위협은 내전이나 정치적 불안 상태에서 더 가중됩니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수히 많은 강제실종이 발생해 오고 있지만, 대부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협약 제1조로써 그 누구도 강제실종을 당해서는 안되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조

1. 누구도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한다.
 2. 전쟁의 위협이 있거나 전쟁 중이거나,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거나 비상상태이거나, 어떠한 상황도 예외 없이 강제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
1.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2. No exceptional circumstances whatsoever, whether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may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for enforced disappearance.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이 채택될 당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현재 미가입 상태입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가입·비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였지만 2020년 법무부가 ‘이행입법위원회’를 추진한 이후, 그 어떤 후속조치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8개 국가가 가입한 강제실종방지협약은 3부 4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조약기구 누리집(<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ed>)를 방문하면 협약의 배경 및 연례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조약기구(Treaty Bodies)⁸⁾

유엔인권협약은 당사국(체결국)의 의무 이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협약마다 이행 감시기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를 조약기구라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9개의 인권협약은 당사국이 협약 이행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심사하는 것이 조약기구의 핵심 기능입니다.



조약기구의 주요 기능

- 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증진한다.
- 당사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국가를 조사한다.
- 조약의 해석(일반논평)과 이행에 관하여 당사국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조약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자문의견을 제공한다.
- 조약 하에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일반 토론을 개최한다.

각 조약기구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하여 최종견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이행 여부를 그 다음 보고서에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약기구는 당사국의 보고서 심사 시 해당 국가의 민간보고서를 일부 반영합니다. 각 조약기구의 심사위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별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 간 의견 차이를 참고하여 당사국이 조치할 사항들을 최종견해에 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8) 유엔에서는 현장기구, 조약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약기구는 규약, 협약을 모두 포함합니다.

조약기구는 대부분 선출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출 방식, 인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각 협약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약기구의 선출 위원 입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약의 당사국 국민으로서 정부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약기구의 선출 위원이 정부를 대표하거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명예직(무보수) 활동으로 그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제인권협약의 가입을 요구하는 이유

국제인권협약에 국가가 가입하도록 촉구하는 이유는 해당 협약의 이행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의무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약 가입
또는 비준



당사국으로서 의무
이행 및 보고서 제출



조약기구(위원회)
보고서 심사



당사국에
최종견해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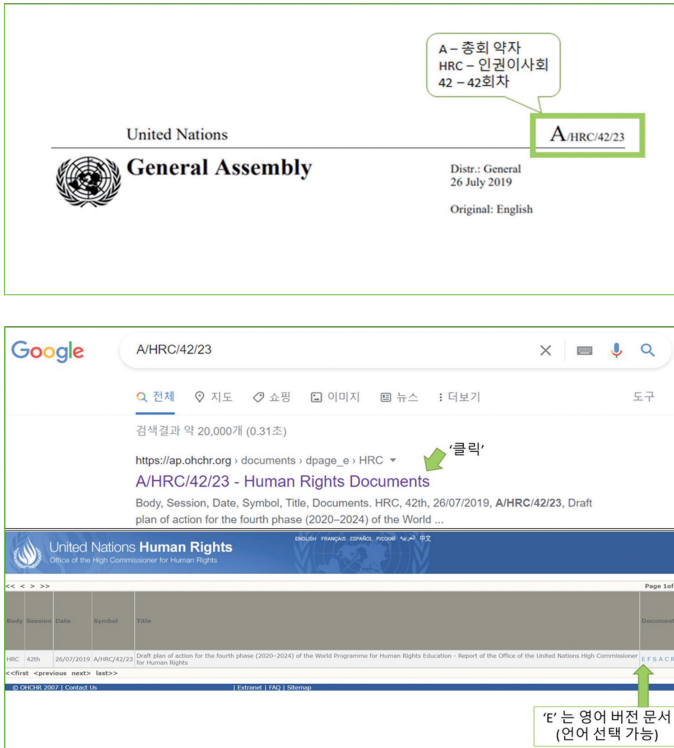


권고사항 이행 촉구
(인권단체 등)



알아두면 쓸만한 TIP

유엔이 채택한 문서의 원문이 궁금하다면, 문서번호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HRC/42/23'을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면 '유엔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 4차 행동계획'의 원문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The top screenshot is the official document page for A/HRC/42/23, titled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ourth phase (2020–202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t includes the UN logo, the tex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e document number 'A/HRC/42/23' highlighted in a green box. A callout bubble points to the document number with the text: 'A - 총회 약자, HRC - 인권이사회, 42 - 42회차'. The bottom screenshot is a Google search result for 'A/HRC/42/23'. It shows the search bar with the document number, the search results, and the document title 'A/HRC/42/23 - Human Rights Documents'. A green arrow points to the document number in the search results with the text '클릭'. Another green arrow points to the document number in the table of contents with the text 'E'는 영어 버전 문서 (언어 선택 가능)'. The table of contents shows the document number 'A/HRC/42/23' and the title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ourth phase (2020–202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총회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후,
1965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였다.

[]
[]

2022년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인권협약은 2개가 있다.

[]
[]

유엔인권협약은 대부분 개인진정절차를 담은 선택의정서를 두고 있다.

[]
[]

각 협약은 당사국의 이행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조약기구가 있다..

[]
[]



교안 만들기

이 워크북의 주제별 학습을 포함하여, 여러 자료를 학습할 때마다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 본 교안은 참고용이므로 디자인, 글씨체, 도형 등 각자의 방식으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생각 넓히기

인권교육 시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거나 여러 사람들과 토의해 보길 바랍니다.



<질문 1>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발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했던 일이나 미얀마 군부가 쿠테타로 정권을 잡을 때, 유엔은 무엇을 했나요? 우리나라도 유엔 회원국인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질문 2>

“국제인권규범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협약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질문1] 답변 예시

그러셨군요.

말씀해 주신 홍콩, 미얀마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들을 접하다 보면, 저도 답답하고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 회원국들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한 국가에서 발생한 일이 인권문제라고 해서 유엔이나 주변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개입한다면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성명을 발표하거나 주변국들이 우려를 표현하는 정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마저도 과도한 개입이라며 항의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권문제를 정치적 판단에 맡기지 않으려면 사람들의 연대가 꼭 필요합니다. 즉 국가를 향해 끊임없이 인권의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숫자가 많아진다면 조금 더 인권에 가까운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답변 예시'는 참고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읽을거리



추천받은 책이나 자료들을 메모하고,
추후 읽은 소감이나 주요 문장을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료명	주제 / 내용	비고
아동인권법규집	아동과 관련한 국내외 모든 법규를 정리한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서 원문 내려받기 가능



메모하기

[illegible]

V.

국가인권기구



[목표]

국가인권기구의 의미,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

예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국가인권기구는 전 세계에 120여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 중 아시아지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7개국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는 대부분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자국의 입법·사법·행정부 및 산하기관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과거 식민지 역사가 있거나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일수록 인권기구의 설립이 더 요구되는 면이 있으며, 이는 아시아지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5> 아시아지역 국가인권기구(2022.6. 기준)⁹⁾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사모아	스리랑카	아프카니스탄	오만
오스트레일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카타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팔레스타인	피지	한국	

9) 2022. 6. 10. 방문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누리집(<https://ganhri.org>)

국가인권기구

학습하기

1.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는 각 나라의 국내법에 기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구이면서, 그 활동의 내용과 방향은 국제인권법에 기준을 두고 있어 이중적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거나 인권침해 판단 시 유엔인권협약을 적용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추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는 1990년대 이후 ‘파리원칙’을 필두로 전 세계에 설립되고 있는데, 이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각 나라의 국가(정부)기관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배경

19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공론화한 적이 있는데, “유엔 인권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각 나라들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 집단, 또는 국가 단위의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권유를 통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후 197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유엔은 인권규범을 효

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고, 이에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1970, 80년대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나라들이 점점 생겨났고, 1980년대 이후 민주화의 길에 접어든 제3세계 국가들이 인권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인권기구를 도입하면서 그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1991년 유엔은 파리에서 ‘제1차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주요 원칙을 합의하였고, 이 합의문은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으로 채택됩니다. 이것을 일명 ‘파리원칙’이라 부르며, 이 원칙은 1993년 유엔총회에서 다시 채택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 파리원칙

유엔 문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결정문이 원칙(Principle)이나 지침(Guideline)일 때가 있습니다. 각 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들이 다르기도 하고, 규정을 만들어도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대부분 원칙이나 지침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중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틀로서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인권기구의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활동방식 그리고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까지 기본적인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1992. 3. 3.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992/54

1993. 12. 20. 유엔 총회결의 48/134 부록으로 채택

A. 권한과 책임

1.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광범위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3. 국가인권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a) 정부, 의회, 그리고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자문의 역할로서,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견, 권고, 제안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특권 뿐 아니라 의견, 권고, 제안 및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관련되어야 한다.

(i) 인권의 보호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법 관련 조항은 물론 법률 및 행정입법의 조항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는 법안과 입법예고는 물론 현재 시행중인 법률과 행정법령들을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법령들이 인권에 관한 근본적 원칙과 양립토록 하는 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권고를 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가인권기구는 새로운 입법, 현행법률의 개정, 행정조치의 시행이나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ii) 국가인권기구가 다루기로 결정한 모든 인권침해상황;

- (iii) 전반적인 인권상황과 구체적인 국내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준비;
- (iv) 국내 어떤 지역에서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 상황을 끝내는 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입장과 행동에 대한 의견표명
- (b) 국내의 법률, 행정 입법, 관행과 그 나라가 당사국이 된 국제인권규범들 사이의 조화와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c) 국제인권규범의 비준 또는 승인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 (d) 조약에 정한 의무에 따라 유엔의 기구 및 위원회와 지역 인권기구에 국가가 제출해야 할 보고서 준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보고서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관련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 (e) 유엔 및 유엔 관련기구, 지역기구 그리고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나라의 국가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 (f) 인권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와 대학 및 전문영역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 (g) 특히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언론기관을 이용해서 대중의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문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노력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

B.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1.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 선거의 방법에 의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다음과 같은 대표자들과의 협력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a) 인권 및 인종차별과 싸울 책임을 맡은 민간단체(NGO), 노동조합, 예컨대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저명한 과학자들의 단체와 같은 관련 사회단체 및 전문가단체;
 - (b) 철학과 종교 사상의 다양한 경향들;
 - (c) 대학교 및 자격 있는 전문가들;
 - (d) 의회;
 - (e) 정부 부처(정부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문자격으로만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하부구조, 특히 적절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적절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인 인력과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그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의 안정적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임명은 특정한 임기를 보장하는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조건 아래 갱신될 수 있다.

C. 활동방식

국가인권기구는 그 운영원칙에서,

- (a)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거나 혹은 그 구성원이나 진정인의 제안에 따라 직권으로 채택한 사안이거나 불문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해야 한다;
- (b) 권한에 속하는 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c) 특히 자신의 의견과 권고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직접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론에 호소하여야 한다;
- (d)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구성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
- (e) 구성원들 가운데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및 지방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 (f) 사법기관 및 (특히 ombudsman과 중재인 및 유사기관과 같이) 그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책임 있는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 (g)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민간단체의 본질적인 역할에 비추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 경제 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 특히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집단 (어린이,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 및 정신장애자) 또는 특정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민간단체와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D.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들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조사,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사안은 개인, 그 대리인, 제3자, 민간단체, 노동조합 또는 그 밖의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들에 따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

- (a) 조정 또는 법률에 정한 범위 안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의 방법으로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 (b) 자신의 권리에 관해 진정하는 당사자에게 특히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알려주고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야 한다;
- (c) 법률의 범위 안에서 모든 고발과 진정을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d)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곤란을 준 법률, 행정입법이나 관행의 개정 또는 개혁을 권한 있는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다. 국가인권기구의 유형

국가인권기구들은 설립과 운영에 있어 공통점이 많지만, 그 지위와 기능 및 권한에 이르기까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유형은 국가인권위원회, 옴부즈만, 전문인권기구, 국가인권

자문위원회, 인권사무소, 인권연구소, 인권센터 등으로 구분되며, 차별금지위원회나 평등위원회가 인권기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형의 역할

- 인권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함
- 전반적인 시민의 인권 증진 및 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를 위해 진정제도를 운영하여 시정, 권고 기능을 수행함
-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기능을 수행함
- 인권과 관련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수행함



“옴부즈만(Ombudsman)” 유형의 역할

- 고전적 옴부즈만은 국가 공공행정이 법에 근거하여 공정히 집행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함
- 인권옴부즈만은 1990년대 고전적 옴부즈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을 통합한 형태로 등장했으며, 고전적 옴부즈만은 공공행정영역만 감시했다면 인권옴부즈만은 그 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됨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에 등록된 회원수는 2022년 기준 227개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도 등록함

대부분 국가인권기구는 헌법이나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대통령령이나 왕령을 근거로 설립된 경우, 파리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니지만 입법기관에 의한 설립이 아니므로 그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The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of Human Rights)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2016년 3월 총회 승인을 거쳐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2016년을 기준으로 ICC에서 GANHRI로 표기가 변경되어 사용중이며, 이는 기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목표와 운영방식 등은 동일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1993년 튀니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스위스 민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합의 설립 목적은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을 준수 및 발전·강화하도록 하고,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을 위한 리더십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유엔헌장」이나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영구적인 참관인 겸 사무국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사무소 내 국가인권기구 지역메카니즘부(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Mechanisms Section)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스위스법상 단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ICC(현 GANHRI) 조직 설립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한

바 있고, 이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여자격을 부여받아(resolution 5/1, Rule 7 (b))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국가인권기구들이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승인소위'를 두고 있으며, 또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승인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회원자격을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등급이 최종 판정되면 해당 국가의 인권기구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및 지역기구에서 등급에 따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120개 인권기구 중, A등급은 90개국, B등급은 30개국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 최초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은 이후, 2008년 심사에서도 A등급을 받았으나, 지난 2014~201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다양성, 독립성 보장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2014년 3월, 2014년 10월, 2015년 3월)나 걸쳐 등급 결정이 연기됩니다. 이후 2016년 5월 재심사에서 다시 A등급을 받아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였고, 2021년 심사에서도 A등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배경

1993년 6월 10일, 10개의 민간단체 회원 21명은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엔나에서 열리는 세계인권대회에 참

가하였는데, 이 당시 이들이 주목한 것 중 하나가 ‘국가인권기구’였고, 세계인권 대회에 다녀온 이후 ‘인권단체협의회’라는 상설적 기구를 만들어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1997년 11월 15일, 김대중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주요 대선공약으로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발표하면서 그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1998년 4월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같은 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공청회를 여는 등 정부 차원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노력이 가속화되는 듯하였지만 1998년 9월 25일 정부가 준비한 「인권위법」 시안에서 인권위를 법무부 산하기구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정부 법안을 강력히 성토했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위의 지위와 기능에 대한 법안을 기초할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민간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1999년 4월 29일 70여 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항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둘러싼 각 정당과 법무부, 시민단체 간의 치열한 공방은 해를 넘기며 계속되었고, 2000년 12월 28일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가라 국가보안법, 오라 국가인권위”라는 구호를 내걸고 인권활동가들은 13일간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2001년 4월 30일, 제221회 임시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수정안이 4표 차이로 통과되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를 규정하게 됩니다.

당시 법안은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미흡과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부족 및 조사대상 기관의 제한 등 보완할 점이 많았지만 1993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요구한 지 8년 만인 2001년 5월 24일에 법률 제6481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되었고, 2001년 11월 25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과 기능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기구로서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인권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정책개선,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이 있습니다.



정책 개선

-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함
-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하여,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담당재판부(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권위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함

조사와 구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서 보장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함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구제함
-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등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도 조사와 구제를 수행함
- 「인권위법」 외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기구이자, 성차별 조사·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교육과 홍보

-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공직자, 시설종사자, 언론인, 일반시민 등 대상별로 다양한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표준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수행함
- 인권교재, 인권영화, 인권만화집, 인권포스터, 인권사진집 등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다양한 인권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직원, 인권단체,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인권도서관을 운영함

- 인권위의 홍보는 모든 이의 인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 기능의 하나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조직 자체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둔 다른 기관들의 일반적인 홍보와 차별화됨

국내외 협력

- 인권 옹호와 향상을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고,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함
- 인권위는 국내 인권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인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각 단체들은 인권 실태조사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권위의 역할을 분담하고 전문성을 보완함

3.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기구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를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4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의 건’을 통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인권조례는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인권이 지역적으로 확산되는데 주요한 이행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인권위 권고를 이행한 곳은 116곳 정도이며, 조례를 폐지하는 지자체도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해당 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 인권팀,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제도, 옴부즈만 등을 각 여건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지자체 인권기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인권 정책의 긍정적 변화도 예상됩니다. 현재 지자체 인권보호관의 소통 창구는 ‘전국지자체인권보호관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역 17개, 기초 10개, 교육청 6개 보호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2016년부터 지자체 인권부서 담당자들이 논의한 끝에 2017년 12월 7일 수원시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토론회’를 통해 14개 지자체, 인권침해차별행위 상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들로 구성하여 출범하였고, 현재 순차적으로 의장도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만한 TIP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비교

인권교육 시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으므로, 간단한 비교표를 준비하여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에 의해 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명칭을 정확히 사용하여 혼란을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설 립 일	2001. 11. 25.	2008. 2. 29.
설립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당전화	국번없이 1331	국번없이 110
주요기능	• 법·제도·정책 관행의 개선 권고 • 인권침해 및 차별 조사·구제 • 인권익식 향상 교육·홍보 • 국내외 인권기구·단체와의 협력	• 고충민원처리 •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부패 발생의 예방·규제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조사범위	• 헌법 제10조~제22조와 관련한 국가기관 등의 인권침해 • 법인·단체·민간의 차별행위 • 진정 없이도 필요 시 직권조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 공직자 부패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조사
특기사항	• 장애차별, 연령차별, 성희롱·성차별 전담구제기관 • 국제인권법의 이행을 담당하는 국제적인 성격 보유	•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 구제창구를 일원화
성격	• 독립기관	• 국무총리 직속기관

국가인권기구

복습하기

메모일 20 년 일 일

지금까지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인권교육에서 국제인권규범은 다양한 인권 현안을 이해하는데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며, 주요 개념을 복습하기 바랍니다.



학습 내용 복습하기

국가인권기구는 파리원칙을 기반으로 설립 및 운영한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옴부즈만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등록된 기구는 현재까지 120개이다.

[]

[]

우리나라는 인권전담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되었다.

[]

[]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정책 개선, 조사와 구제, 교육과 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이 있다.

[]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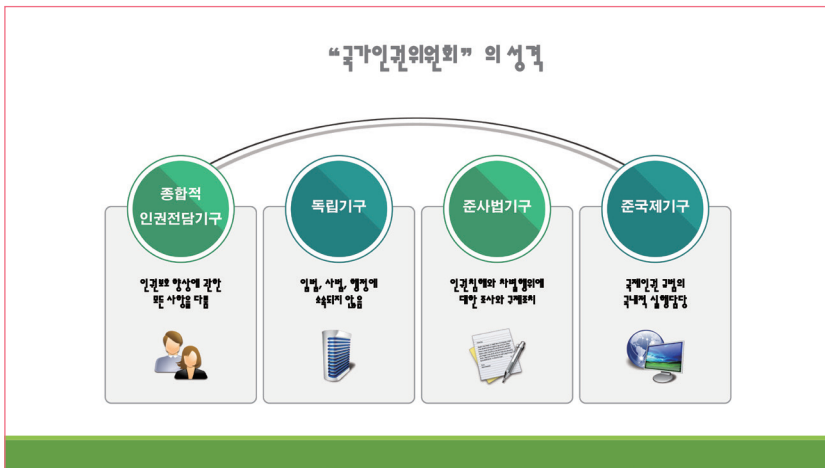
[]

[]



교안 만들기

이 워크북의 주제별 학습을 포함하여, 여러 자료를 학습할 때마다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 본 교안은 참고용이므로 디자인, 글씨체, 도형 등 각자의 방식으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생각 넓히기

인권교육 시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거나 여러 사람들과 토의해 보길 바랍니다.



<질문 1>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 권고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만일 법무부에 권고했을 때 법무부가 그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가요?”



<질문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과정을 보면, 인권활동가와 단체가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인권위와 인권단체는 어떤 관계인가요?”



[질문1] 답변 예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기능이 무의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강제력을 발동시키는 것보다 권고를 가능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전담기구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해당 기관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언론보도에서도 몇 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권위의 권고 기능은 해당 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답변 예시’는 참고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읽을거리



추천받은 책이나 자료들을 메모하고,
추후 읽은 소감이나 주요 문장을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료명	주제 / 내용	비고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각 조항들을 풀이한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서 원문 내려받기 가능



메모하기

[illegible]

VI.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목표]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구제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예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1331’에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담한다면,
인권침해로 진정 접수가 가능한 사례는 무엇일까요?

<사례 1>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자가 공동생활가정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용 아동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CCTV에 대한 고지도 없었으며, CCTV를 설치한 후에도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사례 2>

대학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OO와 △△는 함께 이야기하던 중 의견이 달라 언쟁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OO은 △△에게 욕설과 어깨를 밀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학습하기

1. 인권침해의 의미

인권침해는 ‘침해받은 인권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부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판단 결과의 누적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구체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교육에서 인권침해를 설명할 때 기본권에 대한 침해 여부만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 이루어낸 역사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참여자들이 인권의 가치에 기반하여 인권침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다수가 합의한 약속이나 기준일지라도 인권의 관점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 침해이고 차별입니다.

최규석 작가가 쓴 ‘지금은 없는 이야기’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중 가위바위보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 마을에서는, 대표를 뽑거나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길 때마다 가위바위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 사람만 위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가장 나쁜 집과 안 좋은 음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위바위보를 오른손으로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하던 중 오른손을 다쳤던 그는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권침해는 ‘가위바위보 마을’처럼 규칙이 그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규칙인데 다친 사람에게만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인권교육을 준비할 때 이 마을을 떠올리며, 법률이나 규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법률적 기준이나 인권침해 판단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면, 이는 법교육¹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가. 인권침해의 기준

인권침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사인 간의 관계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 경계가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자유권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인권침해를 심사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을 담고 있는데,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입니다.

10)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 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하고 있다.

1)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도록 정한 원칙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인권을 제한했다면, 제한의 정도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출입국을 규제하고 확진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가동시킬 수 있었던 건 일명 코로나19 3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는 의하지 않고,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했다면 이는 인권침해가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일부개정 내용

○ ‘제13조 제2항 및 제80조 제2호의2’ 신설 주요내용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34조의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이처럼 법률 개정을 통해 절차에 따라 이동경로를 공개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하더라도, 과도한 개인정보의 취합과 공개는 인권의 가치에 기반하여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했더라도 인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여자들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0년 3월 9일

(중략)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환자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와 같이 모든 확진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2)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은 비례(성)원칙이라 부르기도 하며, 이는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은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목적에 정당할 것, 수단(방법)이 적합할 것, 침해가 최소한 일 것 그리고 법익이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 7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이 '흡연권을 침

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청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 여부 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금연구역 지정’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2003년 기준)

○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발췌

입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衡量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8-879 참조).

이 사건 조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조 참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생활을 공유하는 곳에서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여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문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국민의 건강)이 제한되는 사익(흡연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3)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더라도 그 본질적인 것은 제한·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서는 없으며, 법학자마다 견해 차이도 있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정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 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듯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할 목록들을 그 본질적 내용에 포함해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21. 2. 3. | 보도일시: 2021. 2. 3. | 02-2125-9870 | 홍보협력과장 윤설아

담당부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 조형석(02-2125-9820) | 담당: 허지현 주무관(02-2125-9828)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제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사건에 대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인권위 역시 200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가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2020년 유엔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함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18. 10. 「자유권규약」 제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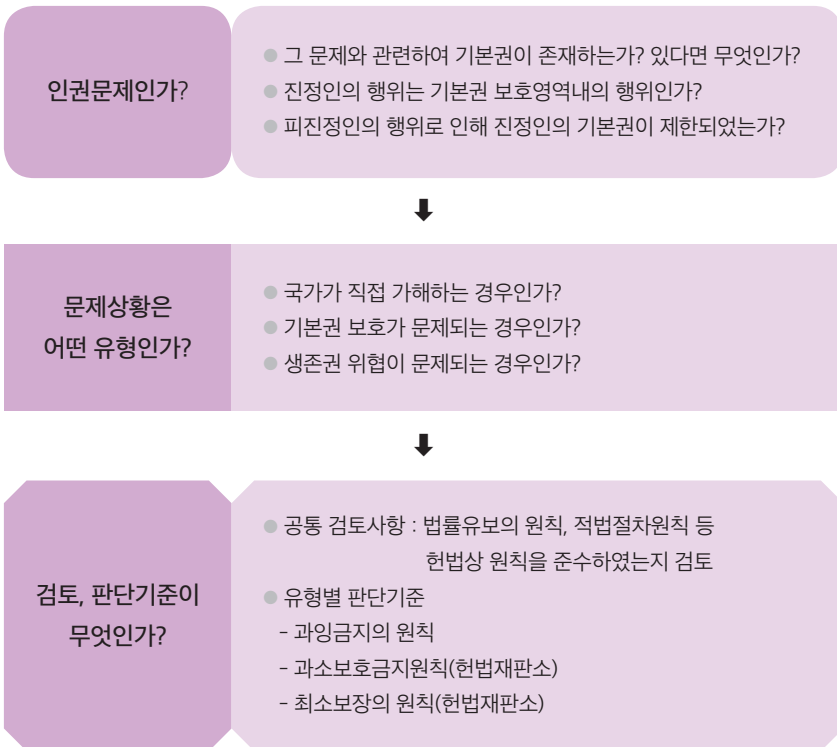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 언급한 바 있다.

- 또한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고 보았다. 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사형제도 존치론 측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은 모든 형사절차에 존재하며 사의 과학화와 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오판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과 같이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결론적으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 인권위는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나. 인권침해 판단 흐름도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몇 가지 질문으로 그 과정을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본권과 관련한 질문이므로, 인권의 권리 목록마다 모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표 6> 인권침해 판단 흐름도¹¹⁾



11) 출처 '인권 첫 걸음', 국가인권위원회, 89쪽

2. 차별행위의 의미

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으로서, 어떤 부정이나 긍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등급이나 수준을 나눈 기준이 미심쩍을 때, 구별하는 방식이 불리하다 느껴질 때 사람들은 차별이란 단어를 떠올립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차별’은 흔한 말이지만, 법률적으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말이나 표정, 몸짓과 같은 구체적 행위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 차별금지사유 및 영역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을 차별금지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총19가지를 차별금지사유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

차별금지사유

단서조항

차별금지조항

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차별금지영역

이처럼 차별금지사유가 많은 것이, 그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석할 수 없지만, 인권교육에서 차별금지사유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기에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주요 교육자료가 됩니다.

차별금지영역은 고용·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및 교육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명시하고 있어 비교적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이 영역 외에서 발생한 차별은 그 진정사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방송인이 인종차별이나 외모비하 발언 시, 이는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영역을 특정할 수 없어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제정되지 않았지만(2022년 6월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뿐만 아니라 일부 개별법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별금지사유로 성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개별법에 따라 차별금지사유와 영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표 7> 국내 개별 차별금지법

법 률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 준고령	근로관계의 성립·종료(모집·채용·해고)
고용정책기본법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병력 등	근로관계의 성립
교육기본법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	교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한 취업	- 직급의 부여, 보직 - 승진, 승급 등
근로기준법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근로관계 존속, 종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신분	- 부당한 차별적 처우 - 근로관계의 종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	근로관계의 성립, 존속, 종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인종, 종교, 성별, 정당, 신분	- 조합원 지위의 취득·유지 - 조합운영에의 참여
아동복지법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	가정, 아동복지시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적	근로관계의 존속

법 률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	● 응급의료
장애인복지법	● 장애	● 생활의 모든 영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	● 고용, 교육, 재화 등 모든 영역
직업안정법	● 성별, 혼인, 사회적 또는 혼인 여부 등	●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관계의 결정
청소년기본법	●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	● 청소년활동·청소년 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
출입국관리법	●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 외국인의 출입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의 신분	● 부당한 차별적 처우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나. 차별의 예외

1) 현존하는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차별금지사유 및 차별금지영역뿐 아니라 단서 조항¹²⁾도 두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우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차별행위의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이나 고궁 등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¹³⁾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¹⁴⁾이 차별이라는 진정을 넣더라도, 이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잠정적 우대, 즉 적극적 조치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극적 조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 평등을 실

12) 단서 조항이란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접속사 ‘다만’을 사용하여 단서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서의 앞 문장을 본문이라고 부르며, 단서는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특정 행위 주체에만 행위·절차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다.(※ 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

13)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4) 2022년 6월 기준 10개 지자체에서 학생 교통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진정직업자격(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차별행위를 판단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진정직업자격은 대표적인 합리적 이유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는 진정직업자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발 디자인을 전담할 직원 채용 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차별행위가 아닙니다.

다. 차별행위의 기준

인권침해는 국가권력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라면, 차별행위는 ‘누가, 누구에게, 누구와 비교하여’, 어떤 이유로 그 행위를 하였는가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에 인권침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심사의 기준이 적용되지만, 차별행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 원칙을 고려합니다. 즉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행위의 합리적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직장내 근무복으로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입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러한 규정을 만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만일 그 이유가 ‘여자는 치마’라는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로 판단됩니다.

라. 차별의 유형¹⁵⁾

1) 직접차별

직접차별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명시적 차별과 은밀한 차별로 구분합니다.

직접차별	명시적 차별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의도를 명백히 밝히는, 그러나 정당화되지 못한 차별
	은밀한 차별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의도를 숨기는, 그러나 정당화되지 못한 차별

명시적 차별이란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여학생에게만 속옷 규정을 적용하거나 마을의 통장·이장의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그 의도가 명백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은밀한 차별은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차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차별의 정황 증거나 가해자의 발성 내용 등을 수집하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용 면접시 면접관이

15)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2014

“전과자인데 어떻게 좋은 시험 성적을 얻을 수 있었느냐”와 같은 질문을 했다면, 이는 직무와 무관한 것일 뿐 아니라 면접자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 결과가 면접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정황상 판단¹⁶⁾되므로 은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2) 간접차별

간접차별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채용공고시 남자는 ‘군필자’라는 기준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적용할 경우, 장애나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군경력이 없는 사람을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직접차별은 ‘성별이 달라서, 장애가 있어서’와 같이 그 사유가 뚜렷하고, 바로 인지할 수 있어 비교적 차별 여부의 판단이 수월하지만, 간접차별은 그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상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은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등 모든 영역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차별 여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즉 ‘20세’라는 나이가 우대받을 때도 있지만, 불리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접차별은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 발생할 때 있습니다. 늘 해오던 것이나 익숙한 것이 알고 보면 차별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토익점수가 입사 지원 기준일 때 듣기평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휴가 사용일수가 승진심사 기준일 때, 육아휴직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6) <04진차30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3)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차별의 영역으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성희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과 적용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 8> 성희롱의 성립요건¹⁷⁾

구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행위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민간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	국가기관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민간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
피해자	불특정	불특정	다른 근로자
업무 관련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형태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	성적 언동 등

17) 2020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제1부), 국가인권위원회, 456쪽

구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행위로 인한 피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진정사건 중 시정권고한 사건과 연도별 통계를 정리하여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긴급구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 인권상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상담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상담 36,343건, 민원안내 44,137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이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권상담은 인권상담조정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서 인권문제가 확인될 경우 진정을 접수하게 됩니다. 또한 인권위는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인권위에 면전진정을 신청하면 인권위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진정을 받기도 합니다.

나. 진정접수

1) 진정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우선 진정 접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즉, 제3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표 9> 진정서 양식

접수날짜	년	월	일	사건번호
------	---	---	---	------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생년월일*	③ 성별*	④ 국적*
-------	-----------------	-------	-------

⑤ 주소*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⑦ 진정사건 결과 통지 방법
☐휴대전화 문자 ☐SNS ☐이메일 ☐팩스 ☐우편(진정서 주소) ☐기타()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생년월일*	③ 성별*	④ 국적*
-------	-----------------	-------	-------

⑤ 주소*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⑦ 진정인과의 관계* ⑧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③ 모르고 있다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	------

③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기관 및 사건번호 ()

□ 언제 () □ 누구 ()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2) 조사대상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등 공적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 간 발생한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행위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진정사건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른 연령차별의 진정사건도 조사·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사범위

인권침해의 조사범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차별행위는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폭넓게 규정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사유에 ‘등’이 있어 19가지의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과 범위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2005. 7. 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조사대상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앞서 ‘예습하기’의 두 가지 사례를 적용해 보면, <사례 1>은 사건의 가해자가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자로서 ‘보호시설’이라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만, <사례 2>는 사건의 가해자가 개인이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례 1>은 이용인의 동의 없는 CCTV 설치 건이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범위에도 포함됩니다. 이에 <사례 1>은 조사대상과 그 범위의 요건이 충족되어 진정접수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다. 사건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조사관에게 배정한 후,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나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거나 범죄 수사나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국가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라. 의결 및 통보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에 대한 의결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수행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아동에 대한 진정사건은 ‘아동권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진정사건은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권고, 기각, 각하, 이송 등의 결정문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 통지문이 진정인과 피

진정인에게 제공되며, 해당 진정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고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인정’하여 내리는 판단 결과
- 기각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판단 결과
- 각하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등
- 이송 :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진정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라 각하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각하란 진정사건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한 것 이므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각하 결정이 ‘침해나 차별 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주 요 용어들은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각하’ 규정

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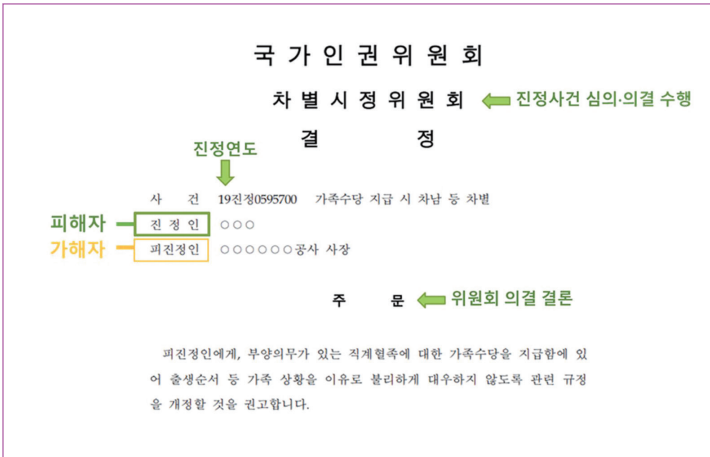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인권교육에서 권리구제절차는 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1331을 비롯한 112(아동학대, 경찰청),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1303(국방부 헬프콜) 등 상담·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절차나 운영이 기대만큼 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할 때는 이용방법뿐 아니라 그것이 갖는 한계와 그 한계의 구조적 원인도 분석·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쓸만한 TIP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교육자료로 사용할 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어 참여자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간단한 보조 설명을 사용하면, 내용의 전달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 및 구제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이다.

[]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는 1331이다.

[]
[]

국내법에는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한 개별 법률이 있다.

[]
[]

차별의 유형에는 직접차별, 간접차별이 있으며, 성희롱도 차별 영역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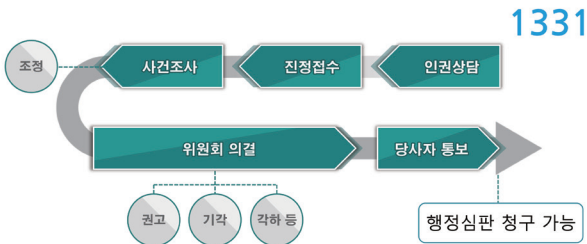
[]
[]



교안 만들기

이 워크북의 주제별 학습을 포함하여, 여러 자료를 학습할 때마다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절차 안내



※ 본 교안은 참고용이므로 디자인, 글씨체, 도형 등 각자의 방식으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질문으로 생각 넓히기

인권교육 시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거나 여러 사람들과 토의해 보길 바랍니다.



<질문 1>

“제가 1년마다 재계약하면서 5년 동안 근무를 해왔는데, 갑자기 범죄사실조 회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5년 전 전과가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재계 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인권침해 아닌가요?”



<질문 2>

“요즘 너무 세상이 각박한 것 같아요.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인권침해다, 차 별이다 그러니 어떤 말도 못하겠어요. 직원들끼리 밥먹다가 농담도 할 수 있 는 거 아닌가요? 함께 웃어보자는 거잖아요.”



[질문1] 답변 예시

그러셨군요.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인권침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의하면, 실효된 전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6하 원칙에 따라 간단히 내용을 작성하여 1331 전화 문의나 인권상담 조정센터를 방문해 보면 어떨까요? 인권상담을 통해 침해 여부 가능성이 확인되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답변 예시’는 참고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자료명	주제 / 내용	비고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2020)	성희롱 진정사건을 묶어놓은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능



메모하기

[illegible]

부록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

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 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본문은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한글 번역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 폭행 · 협박 ·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 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 · 외환 · 천재 ·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 · 국민투표안 · 조약안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 · 결산 ·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 · 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 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 · 합동참모의장 · 각군참모총장 · 국립대학교총장 ·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 직무범위 · 감사위원의 자격 ·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

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 수산자원 ·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농 ·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 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 ·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72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2022. 1. 4., 2022. 4. 26.>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 보호소
 -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
-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도·사관후보

생 · 준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 보충역, 군무원

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시행일: 2023. 4. 27.] 제2조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6. 2. 3.>
 -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 2. 3.>
 -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 [전문개정 2011. 5. 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7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제) 위원은 위원회나 제1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1조삭제 <2005. 7. 29.>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5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군인권 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 <개정 2022. 1. 4.>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19.]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 · 제도 · 정책 · 관행의

-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 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1. 5. 19.]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3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⑥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⑦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시행일: 2022. 7. 21.] 제26조

제27조(인권도서관) ① 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③ 삭제 <2012. 3. 21.>

④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2. 3. 21.]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군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 7. 29.>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2005. 7. 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

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 소속공무원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

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 · 피해자 ·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19.]

제37조(질문 · 검사권) ① 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

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 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등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 ·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

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0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 ·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 · 구제

<신설 2022. 1. 4.>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0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4.]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①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 · 외교 ·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등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군 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전화·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②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

사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50조의8(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등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5장 보칙 <개정 2011. 5. 19.>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장 벌칙 <개정 2011. 5. 19.>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1. 4.>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1조(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1. 5. 19.]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2. 1. 4.>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④ 삭제 <2020. 3. 24.>

⑤ 삭제 <2020. 3. 24.>

⑥ 삭제 <2020. 3. 24.>

부칙 <제18721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진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군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임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할 때(임기가 끝난 상임위원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를 말한다)까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한다.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1」 참고자료

이 워크북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참고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누리집에서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가나다순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해설집, 2006
-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2020
- 교사, 인권교육하다, 2022
- 국가인권기구 안내서, 2004
-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서, 2006
-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2020
-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2021
-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 2012
- “동료강사가 들려주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2021
- 보도자료,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2021.2.3.
-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0.3.9.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세계인권선언의 이해, 2018

-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인권의 이해, 2018
 -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2016
 -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2020
 -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2015
 - 유엔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18
 - 인권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연구, 2021
 -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2016
 - 인권교육 기본용어, 2020
 - 인권교육의 알파와 오메가, 2020
 -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지표 교재 개발 연구, 2019
 -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2011
 - 인권 길라잡이, 2017
 - 인권상담사례집, 2016, 2017
 - 인권의 이해 : 인권교육을 위한 핸드북, 2019
 - [인권] 웹진, 2020년 6월호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2021
 - 인권 첫걸음, 2015
 -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안내서, 2021
 - 지자체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 2018
 -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제1권), 2020
 - 차별판단지침, 2008, 2014
 -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2013